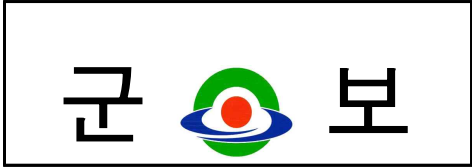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47호 2024. 7. 22.(월)

선 람	기 관 의 장

규 칙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39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39호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 업무를 관장한 주관 부서에서 신청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조제3호가목의 경우 공모 결과 선정공문 접수일에 별표의 지급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비 내시 공문 접수일에 그 차액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 기준으로 포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6조제1호 중 “인센티브”를 “군수 표창 또는 인센티브”로 하고 “해외여행”을 “해외여행, 특별휴가 등 일체의 포상”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지급) ① 포상금은 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공금 계좌에 입금하고, 유공자는 유공자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

② 제4조제1호의 기관평가 우수부서 분야에 해당이 되어 사업비 등 장려금을 상으로 받아 예천군의 재정 확충에 기여한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서 50만원의 범위 내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가목 공모사업의 경우 발표심사, 현장평가 등 치열한 경쟁을 수반하여 선정된 사업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서 50만원의 범위 내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동 추진에 관한 지급) ①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에는 별표 포상금 지급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주도적으로 추진한 주관 부서는 총 포상금의 100분의 70, 협업부서는 100분의 30 비율로 배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 참여한 부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기관평가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에 참가비나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2. 직원의 직접적인 실적이 아닌 민간 단체나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인센티브 지급 기준

1. 기관평가 우수부서 분야

등급	평가단위	평가기관	인센티브	
			포상금 (부서)	특별휴가 (유공자)
최우수 (1위)	중앙 (전국단위)	공공	200만원	2일
		민간	100만원	
	광역 (도단위)	공공	150만원	
		민간	100만원	
우수 (2위)	중앙 (전국단위)	공공	150만원	
		민간	70만원	
	광역 (도단위)	공공	100만원	
		민간	70만원	
장려 (3위 이하)	중앙 (전국단위)	공공	100만원	
		민간	50만원	
	광역 (도단위)	공공	70만원	
		민간	50만원	

※ 순위 결정(등급) 없이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기관표창)된 경우 평가단위별로 우수 등급을 적용

- ※ 다음의 경우 수상등급의 1단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 절대평가 등에 따라 다수 기관이 동일한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 시상(표창장, 표창패 등)이 없는 단순 평가인 경우

2. 투자유치 분야

평가단위(투자유치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200억원 이상	125만원	15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00만원	100만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75만원	70만원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만원	50만원
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미지급	30만원

○ 투자유치액 기준

– 산업단지 내

-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상의 총투자금액
- 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미신청자 : 분양계약서 상의 총분양금액

– 산업단지 외(민간투자 및 기관유치 등) : 분양(또는 매매) 금액 + 건축비

○ 투자유치일 기준

– 산업단지 내

-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공문 제출일
- 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미신청자 : 분양계약서 작성일

– 산업단지 외(민간투자 및 기관유치 등) : 건축 착공신고서 제출일

3-가. 공모사업 분야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준비 0%	준비 50% 이하	준비 50% 초과
140억원 이상	125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80억원 이상 ~ 14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3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10억원 미만	25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 국도비 공모사업 사전심사를 거쳐 확보한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만 인정
(국도비 공모사업 사전심사 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예외)

3-나. 신규 현안 사업 분야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준비 0%	준비 50% 이하	준비 50% 초과
150억원 이상	125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6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30억원 이상 ~ 60억 미만	50만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신규 국도비 사업이면서 1차년도 사업 추진 후 신청 가능
(미공모사업, 통상적인 공모사업, 군 실링사업 신청 가능)

4. 예산절감 분야

평가단위(예산절감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5억원 이상	75만원	150만원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5만원	50만원

5. 세입증대 분야

평가단위(세입증대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1억원 이상	75만원	15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5만원	50만원

6. 시책개발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부서	유공자
시책(자체사업)을 추진하여 파급효과가 큰 경우	75만원	150만원
	50만원	100만원
	25만원	50만원

※ 사업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7.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위원회에서 공감하는 공적	유공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 중앙 또는 광역 단위 파급효과가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이룬 경우
- 대규모 축제,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우
- 집단·고질민원,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는 등 탁월한 군정 성과를 거둔 경우
- ※ 부서(팀)의 일상적인 업무,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사업, 종결되지 않은 사업은 심사 제외

8.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구분	최우수	우수	장려
부서업무 종합평가(부서평가)	부서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읍면행정 종합평가(읍면평가)	읍면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업무추진 우수사례 평가	부서, 읍면	150만원	100만원	80만원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인센티브	유공자	1인당 최대 50만원		

※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은 매년 초 수립하는 군정성과 종합평가 계획을 따름

◇개정이유

-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 및 지급 범위 등을 확대·정비하여 포상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포상금 추가 지급 조문 신설(안 제10조, 제11조)

- 사업비 등의 장려금을 상으로 받아 예천군 재정 확충에 기여한 경우 및 치열한 경쟁을 수반하여 선정된 공모사업의 경우 포상금 추가 지급
- 부서가 평가나 공모에서 공동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 포상금 추가 지급

나.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담당자 포상금 항목 추가(안 별표)

-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분야」에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담당자 인센티브 항목 추가 → 목표 달성 시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